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7. 6.

발 의 자 : 유성엽·황주홍·장정숙
이찬열·김광수·김경진
천정배·김종회·이용호
장병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친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 내에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의2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2(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미
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로서
중전의 제766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80조의2(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시효정지) 미성년자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u></p>